

---

# 「토지보상법」 제67조제1항의 “협의 성립 당시” 의미

---

## 1 질의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토지보상법” 이라 함) 제67조제1항에서 “협의 성립 당시” 의 의미

## 2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1항은 “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,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”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여기서 “협의 성립 당시” 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를 매매하거나 사용하기로 합의한 날을 의미합니다. [2014.10.28. 토지정책과-6779]